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07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219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21. 6. 25.

판 결 선 고 2021. 8. 20.

주 문

1. 피고가 2021.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27,875,030원, 지방교육세 10,764,150원, 농어촌특별세 5,382,0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07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2018. 12. 17. 농작물의 생산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2) 원고는 2018. 12. 18. B와 사이에 B로부터 [redacted]군 C 전 1,729㎡, D 전 1,8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받고 그 가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배정하는 내용의 현물출자계약(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9. 1. 15. 발행주식 총수를 2,000주에서 772,680주로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마쳤고, 2019. 1.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취득세 등의 면제

원고는 2019. 1. 24. 피고에게 '원고가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1) B는 2020. 5. 1. 원고를 상대로 [redacted]법원 2020머51386호로 'B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원고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착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07

로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2) [redacted]법원에서 2020. 5. 28.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B는 원고에게 원고 발행의 보통주 761,590주를 반환한다'는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를 원인으로 하여 2020. 5. 29.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고, 2020. 6. 2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B가 현물출자한 자본금 중 3,807,950,000원(761,590주)을 감소하는 결의를 한 후 2021. 3. 26. 자본금 감소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의 취득세 등의 부과 고지

피고는 2021. 4. 1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면제 대상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면제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 127,875,030원, 지방교육세 10,764,150원, 농어촌특별세 5,382,07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매도인인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였는바,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지방세 추징대상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면제 대상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07

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11조 제1항은 농업법인의 운영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 12. 31.까지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 제11조 제3항은 농업법인이 부동산을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일시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제2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07

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나) B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위 조정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B는 원고에게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반환한다'는 이 사건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원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B에게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존재하였으나, 그 뒤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취소의 소급효로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행위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의 성격이 원고와 B 사이의 합의해제와 유사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참조). 이러한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07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나,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다3730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정조서의 청구의 표시에 부가적으로 기재(첨부)된 조정신청서에는 'B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의 효력은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었다는 권리관계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법 제11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매각 · 증여'란 유상 · 무상을 불문하고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매각 ·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이어서 이를 매각 ·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07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07

별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 2014.6.3, 2014.11.19, 2015.12.29, 2016.12.27, 2017.7.26, 2019.8.27>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1., 2019.8.27>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7.12.26>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7.12.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4.12.31, 2016.12.2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07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④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설 2017.12.26.>. 끝.